

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요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고, 요금 감면 및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(안 제34조제4항)
 - 과도한 수도사용, 누수, 미납의 사유: 3회 이내 분할
- 요금 등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정비(안 제41조)
 - 확대 : 요금 전자 고지 신청자(안 제41조제1항제11호)
 - 정비 :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(안 제41조제1항제2호)
 - 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예우·지원 대상 개정
-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의 해제 시 수수료 징수 폐지,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(안 제44조제2항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1조~제6조의4, 제10조~제14조, 제16조~제5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, 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수도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, 분할납부 근거를 신설하고,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및 정수예고 방식 개선, 전자고지 도입, 요금 감면 대상자 정비 등을 통해 수도요금 부과·징수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분할납부 규정 신설과 정수해제 수수료 폐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자고지 규정 신설을 통해 이용자 편익과 행정 운영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해당 권고가 2020년에 시달되었음에도 조례 반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권익위 권고 이행 사항 및 법령 정비 요청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, 전자고지를 통한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.